

제4장 결론

지금까지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망 보급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건설사에서 자체 표준을 마련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고대역·고품질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도화가 필요하였다.

기축 공동주택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내통신실의 환경은 대체로 양호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세대수가 작거나 지방 도시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아예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차제하더라도 실제 통신실의 목적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소장을 위시하여 모든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더 없고 해당 설비가 입주민 소유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 따라 통신실을 역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 장비 과열에 따른 화재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통신장비 사용 보증기간 초과에 따른 원활한 이용을 위한 대체계획 마련은 아예 없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구내통신 선로설비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치 후 해당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유지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해당사자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 건설사, 통신사업자 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유지관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건설사의 경우 입주민이 입주 한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해당 설비의 유지관리의 책임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이 입주민에게 이양되는 만큼 입주민들의 인식제고가 가장 우선이다. 이에 따라 조속히 입주민이 납득하고 건설사와 통신사업자 등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를 촉진·유도하기 위하여 기축건물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축 공동주택에 구내망 사업자 진입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최초 건설사가 시공한 구내통신 선로설비는 최소 3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초고속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통신실은 물론 구내통신 선로설비도 정형화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건설사가 설치한 설비를 활용하지 않고 사업자마다 별도의 구내통신 선로설비를 구축함에 따라 중복설치에 따른 설치비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중복설치에 따른 설치비 중복 현상만이 아니고,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자율 경쟁체계를 무시하는 시장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진입한 대형 사업자인 경우 후발 사업자인 소형(SO, NO 등) 사업자들은 지역 구내망 진입자체를 못하는 등 불공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입주민의 자산인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불필요한 과점으로 인해 입주민의 사업자/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설치한 설비는 입주민 소유인만큼 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입할 때 최대한 기존 설비를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입주민 소유의 구내통신 선로설비를 통신사업자가 활용할 때는 구내통신 설비를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임대 기준과 임대에 따른 임대수수료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마련해 이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내통신망 사업자의 진입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결과 최소 2개 이상의 통신사업자가 진입하여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KT, SKBB, LG U+의 경우 조사 대상 294개 공동주택 단지 모두에 진입하였고 5개 이상의 사업자가 진입한 사례도 많았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지역 SO 사업자들이 대형 사업자 영업환경 사이에서 나름대로 영업 범위를 개척하여 진입하였다. 따라서, 구내통신망 사업자들의 진입은 시장경쟁 체계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MSO의 경우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자율적 시장경쟁 체계 마련을 위해 입주민 소유의 구내통신 선로설비 임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했다. 물론 입주민 소유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주인의식 고취는 입주민이나 입주민 설비를 관리 대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책임 또한 그 사명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Appendix

1. 구내통신 선로설비 환경조사 결과
2.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일본 : NTT-ME의 SOPP)
3. World Wide FTTH Overview
 - FTTH Asia-Pacific Council Report
 - OVUM Research Report
 - IDATE Research Report
 - Pyramid Research Report